

제주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나1451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제주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나14519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0가소1549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22. 8. 24.

판결 선고 2022. 9. 28.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0가소1549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99,6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2. 27. 원고를 상대로 '건축공사 계약금 300만 원 및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2,832,000원 합계 5,8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제주지방법원 2019가소63139 사건, 이하 아래 항소심, 상고심 사건을 통틀어 '관련 사건'이라 한다), 원고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이하 '관련 제1심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7. 25.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9년 금 제1599호로 관련 제1심판결에 따른 원리금 6,099,698원[= 원금 5,832,000원 + 지연손해금 267,698원(= 5,832,000원 × 112/366일(2019. 4. 6.부터 2019. 7. 26.까지))]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가 관련 제1심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9나12473 사건), 위 법원은 2020. 6.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축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항소심판결'이라 한다). 피고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0. 9. 3.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다241437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관련 제1심판결에 따라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6,099,698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령하였는데, 관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관련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금 6,099,698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099,6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 3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관련 항소심판결에서 피고가 2018. 11. 29. 원고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 300만 원은 피고가 C에게 공사를 맡기고 C 대신 원고에게 송금하였던 돈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건축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 점, ② 관련 사건과 이 사건은 당사자가 서로 바뀌었을 뿐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은 동일하고, 관련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건축공사 계약금의 반환을 구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관련 제1심판결에 따라 수령한 공탁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물은 다르나 이 사건은 사실상 관련 사건에서 지급된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하는 것인 점, ③ 이 사건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이체결과 확인서와 관련 사건에서 발령되었으나 확정되지 않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등본뿐인 점(피고가 제출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관련 사건에서의 인정사실을 배척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비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자신 소유의 거꾸집을 방치하여 그 기간에 상응하는 지료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3)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판사강건

판사정가원

판사이선호